

# 심사보고서

의료비후불제 용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

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

# 심 사 보 고 서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253 |
|----------|-----|

2023. 4. 28.(금)  
정책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3년 4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4월 20일

-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신성영 보건복지국장)

가. 제안사유

-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치아교정 확대에 따라 취약계층\* 본인의 자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강화

\*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장애인

- 他 의료지원제도에서 보장되지 않는 치아교정 지원을 통해 부정교합으로 인한 턱관절 장애, 치주질환 등 사전예방 및 폭넓은 의료선택 기회 제공

## 나. 주요내용

- 사업내용: 금융기관(농협)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, 환자는 무이자 장기분할 방식으로 상환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
- 채 권 자: NH농협은행(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)
- 주채무자: **의료비후불제 용자금을 받은 도민**
  - (현행) 65세 이상인 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장애인
  - (변경) 65세 이상인 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 조례 상 지원대상
- 용자금액: 25억원(농협정책자금)
- 용자조건: 1인 300만원 한도 / 3년 무이자 분할상환
- 보증기간: 대출금 전액 상환시까지
- 보증범위: 의료비후불제 대출 원리금  
(미상환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道에서 보전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 가. 제출배경

-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본 의료비후불제 용자금 채무보증 변경 동의안(이하 “본 동의안”이라 함)은 치아교정사업 지원에 한정하여 사업대상자를 「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」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취약계층 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녀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.
- ※ 본 동의안에서 용자금액(25억원), 용자조건(1인 300만원 한도 / 3년 무이자 분할상환)의 변경은 없음.

- 본 동의안의 제출 사유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3조(보증채무부담행위 등) 제 3항4)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확대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변경사항에 해당 되는 바,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임.

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본 동의안은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대상 시술(수술) 범위를 치아교정<sup>5)</sup> 영역 까지 확대하고, 사업대상도 의료취약계층 본인의 자녀까지 확대하여 보건의 료취약계층의 치아교정 영역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.

### <의료비 후불제 사업 대상 시술(수술) 확대>

| 현 행  | 확 대(안)  |
|--|---|
| ○ 대상수술<br>- 임플란트 식립, 슬관절·고관절 인공관절, 척추 및 심·뇌혈관 수술(시술) | ○ 대상수술<br>- 임플란트, 슬·고관절 인공관절, 척추, 심·뇌혈관, <b>치아교정 수술(시술)</b> |

### <의료비 후불제 사업 대상자 확대>

| 현 행  | 확 대(안) * 중복제거   |
|--|---|
| ① 65세 이상 노인(314,485명)<br>② 기초생활수급자(46,638명)<br>③ 차상위계층(25,913명)<br>④ 국가유공자(6,501명)<br>⑤ 장애인(47,012명) | ① 65세 이상 노인(314,485명)<br>② 기초생활수급자(46,638명)<br>③ 차상위계층(25,913명)<br>④ 국가유공자(6,501명)<br>⑤ 장애인(47,012명)<br><br><b>※ 치아교정의 경우, 의료취약계층(②,③,④,⑤)의 자녀까지 지원</b> |

4) 「지방재정법」 제13조(보증채무부담행위 등)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5) 치아교정: 치열이 비틀어지거나 돌출입, 부정교합인 치아를 교정장치를 이용해 고르게 만들어주는 시술

- 치아교정은 단지 심미적 이유가 아니라, 부정교합으로 인한 턱관절 장애, 치주질환 등의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수술(시술)이며, 현재는 연령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남녀노소가 진행할 수 있는 치료(물론 초등6학년부터 중학교 때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)임을 감안할 때,
  - 보건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他 의료지원제도에서 보장되지 않는 치아교정 비용을 용자해 줌으로 폭넓은 의료선택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 동의안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.
  
- 다만, 의료비후불제 용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은 2022년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된 이후, 올해 1월 19일 사업대상자 확대<sup>6)</sup>를 위한 첫 번째 변경 동의안이 제출돼 원안 가결되었었고, 변경 동의안이 가결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대상수술 범위 및 사업대상자 확대를 위한 본 동의안이 두번째로 제출된 것임.
  - 물론, 본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시범적 성격의 사업인 만큼 실제 사업 수요자의 규모 추계가 어렵고, 「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」제7조<sup>7)</sup>에 지원대상 질병의 범위는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잦은 변경 동의안 제출은 기획단계에서 제대로 된 수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방증함.
  - 이에, 사업 계획 전반(특히, 수술(시술) 대상 사업 및 대상자 범위 관련)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6) 1.19. 변경동의안 내용: 사업대상자 확대 : 112,358명 → 440,549명(증 328,191명)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 경 안 * 중복인원 제거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(31,915명) | ① 65세 이상 노인(314,485명) |
| ②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(10,311명)   | ② 기초생활수급자(46,638명)    |
| ③ 만 65세 이상 장애인(50,195명)     | ③ 차상위계층(25,913명)      |
| ④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(19,937명)   | ④ 장애인(47,012명)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 국가유공자(6,501명)       |

- 7) 제7조(참여 의료기관의 지정) ① 도지사는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의료비 용자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(이하 “참여 의료기관”으로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  
 ② 도지사는 참여 의료기관과 지원대상 질병의 범위, 사업참여 기간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- 본 동의안에서 사업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녀까지로 확대한 것 (치아교정의 경우로 한정)은 「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 지원 조례」제5조제1항제5호<sup>8)</sup>에 따른 조치로 판단됨.
- 그러나, 제5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수시로 또는 과하게 확대할 경우, 도지사의 재량범위 과다 및 남용 문제 발생으로 법정주의(法庭主義) 원칙을 희석시킬 수 있음.
- 따라서, 제5조제1항제5호에 근거한 대상자 범위 확대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, 향후 추가 확대 상황이 발생할 시, 대상 범위에 관한 사전 조례 개정의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.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의료비후불제의 사업대상 수술(시술) 및 사업대상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 「지방재정법」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, 내용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.
- 다만, 잦은 변경 동의안 제출을 지양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, 사업 계획 전반(특히 수술(시술) 대상 사업 및 대상자 범위 관련)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---

8) 제5조(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) ①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비 용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3.2.1.>

1. 65세 이상인 자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5.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의료비 용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」

#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변경동의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253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23년 4월 11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치아교정 확대에 따라 취약계층\* 본인의 자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강화
  - \*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장애인
- 他 의료지원제도에서 보장되지 않는 치아교정 지원을 통해 부정교합으로 인한 턱관절 장애, 치주질환 등 사전예방 및 폭넓은 의료선택 기회 제공

## 2. 주요내용

- 사업내용 : 금융기관(농협)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, 환자는 무이자 장기분할 방식으로 상환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
- 채 권 자 : NH농협은행(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)
- 주채무자 : 의료비후불제 융자금을 받은 도민
  - (현행) 65세 이상인 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장애인
  - (변경) 65세 이상인 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 조례 상 지원대상
- 융자금액 : 25억원(농협정책자금)
- 융자조건 : 1인 300만원 한도 / 3년 무이자 분할상환
- 보증기간 : 대출금 전액 상환시까지
- 보증범위 : 의료비후불제 대출 원리금  
(미상환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道에서 보전)



### **3. 참고사항**

- 의료비후불제 사업대상 확대 계획(안) 불임

### **4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임**

### **5. 기타 : 해당없음**

# 붙임1

## 의료비후불제 사업대상 확대 계획(안)

### □ 필요성

- 의료비후불제 사업 확대로 더 많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욕구를 반영하고 질병치료를 지원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

### □ 사업개요

- 사업시행 : '23. 1. 9.
- 참여병원 : 133개소(종합병원급 12, 병원급 9, 치과의원 112)
- 대상수술 : 임플란트, 슬고관절 인공관절, 척추, 심뇌혈관, 치아교정 수술(시술)
- 사업대상 확대(안)

| 현 행  | 확 대(안) * 중복제거  |
|--|--|
| ① 65세 이상 노인(314,485명)<br>② 기초생활수급자(46,638명)<br>③ 차상위계층(25,913명)<br>④ 국가유공자(6,501명)<br>⑤ 장애인(47,012명) | ① 65세 이상 노인(314,485명)<br>② 기초생활수급자(46,638명)<br>③ 차상위계층(25,913명)<br>④ 국가유공자(6,501명)<br>⑤ 장애인(47,012명)<br><br>※ 치아교정의 경우, 의료취약계층(②,③,④,⑤)의 자녀까지 지원 |

- 사 업 비 : 2,500백만원(농협 정책자금)
- 도비소요액 : 923백만원(농협 정책자금 이자<sup>연6%</sup> 및 미상환금 보전<sup>미상환율 30%</sup>)
- 사 업 량 : 830명<sup>(최소)</sup>~5,000명<sup>(최대)</sup>
- 지원내용 : 최대 3년간 무이자 융자(대출) ※ 1인당 50 ~ 300만원

#### <치아교정 사업 >

- ❖ 지원대상 : 취약계층 본인 및 자녀
- ❖ 지원금액 : 후불제(300만원) + 교정비 지원금\*(200만원)  
\* 교정비 지원금 : 고향사랑기부금 + 치과 기부금 + 공동모금회·적십자사 자체예산
- ❖ 참여병원 : 29개소
- ❖ 주요내용 : 의료비후불제 및 교정비 지원금 활용 치아교정 실시

## □ 추진상황

- 의료비 후불제 TF팀 구성 : '22.07.
-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및 회의(4회) : '22.08~10.
- 충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 완료 : '22.09.
- 참여기관(의료기관, 농협 등) 간담회 : '22.10.
-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: '22.10.
-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(보건복지부) : '22.10.
- 도의회 채무보증 동의안, 조례제정안 의결 : '22.12.
- 시범사업 운영지침 수립 : '22.12.
- 의료비후불제 참여기관 협약 : '22.12.
-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추진 : '23.01.
- 의료비후불제 민원대응반 운영 : '23.01~02.
- 의료비후불제 용자 지원범위 확대(재활치료비, 간병비 등) : '23.01.
- 의료비후불제 신청자격 확대(65세 이상 및 취약계층 연령제한 폐지) : '23.02.
- 의료비후불제 참여병원 지속 확대(병원급<sup>100</sup>병상 이상 의료기관 등) : '23.02~

## □ 기대효과

- 적기 질병치료를 통한 삶의 질 향상(영양공급 및 사회작정서적 안정 등) 및 기대수명 연장 제고
- 지원받은 의료비를 상환하여 다른 어려운 도민에게도 도움을 주는 선순환(善循環)적 의료복지제도 정착

## □ 향후계획

- 의료비후불제 사업 치아교정 세부 운영지침 마련
- 이통장, 읍면동 복지팀, 경로당 강사 등 활용 대면홍보 강화

**□ 「지방재정법」**

제13조(보증채무부담행위 등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(이하 “주채무”라 한다)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**□ 「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」**

제3조(채무보증의 승인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충청북도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**□ 「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」**

제5조(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) ①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비 용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3.2.1.>

1. 65세 이상인 자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5.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의료비 용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도지사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신청내용의 적정성,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, 사업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.

③ 지원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.

제11조(채무보증)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용자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용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「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」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.